금융소비자보호기준

금융소비자보호기준

2022.01.12 제정

제 1 장 총 칙

제1조(목적)

이 기준은 「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」(이하 "법"이라 한다) 제32조제3항, 「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(이하 "시행령"이라 한다) 제31조, 「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」(이하 "감독규정」(이하 "라 독규정"이라 한다) 제29조, 「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기준」(이하 "내부통제기준"이라 한다) 제4조제2항 및 관련 법규(이하 총칭하여 "금융소비자보호법령"이라 한다)에서 정한 바에 따라, 금융소비자의 권익 증진과 금융소비자의 피해 예방 및 신속한 구제를 통한 금융소비자의 보호를 위하여 회사의 임직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준수하여야 할 기준 및 절차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용어의 정의)

- 이 기준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 이 기준에서 달리 정의되지 않는 한 금융소비자보호법령에서 정의된 용어와 동일한 의미를 갖는다.
- 1. "금융소비자보호"란 회사가 제공하는 상품 및 서비스 등을 이용하는 자가 금융거래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한 예방 및 피해구제, 교육, 홍보 등을 포함한 전반적인 소비자보호 활동을 말한다.
- 2. "금융소비자"란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 체결의 권유를 하거나 청약을 받는 것 (이하 "금융상품계약체결등"이라 한다)에 관한 금융상품판매업자의 거래상대방 또는 금융상품자문 업자의 자문업무 상대방인 전문금융소비자 또는 일반금융소비자를 말한다.
- 3. "금융상품"이란 회사가 금융소비자를 상대로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그 대상이 되는 상품 및 서비스를 말한다.
- 4. "금융소비자보호 총괄기관"이란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내부통제를 금융상품의 개발 또는 판매업무로부터 독립하여 수행하는데 필요한 조직으로서 감독규정 [별표 2]에서 정한 '금융소비자보호 총괄기관'을 말한다.
- 5. "금융소비자보호 총괄책임자"란 이 기준의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이 기준을 위반하는 경우 이를 조사하는 등 금융소비자보호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을 말한다.
- 6. "민원"이라 함은 금융소비자의 권리행사를 포함하여 회사의 고객인 금융소비자가 당사 업무와 관련하여 서면, 구두 또는 전자메일 등으로 제기하는 이의신청, 진정, 건의 또는 질의 등을 총칭하다.
- 7. "분쟁"이라 함은 소송, 조정, 중재를 포함하여 금융소비자와 회사 사이의 다툼을 말한다.

제3조(적용 범위 등)

① 이 기준은 회사의 모든 임직원과 금융소비자보호와 관련한 모든 업무에 적용된다.

② 금융소비자보호와 관련하여 이 기준, 내부통제기준 및 이 기준의 위임에 따른 내부규정 등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금융소비자보호법령에 의한다.

제 2 장 금융소비자의 권리

제4조(금융소비자의 기본권리)

회사는 다음 각 호의 금융소비자의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.

- 1. 회사 및 임직원의 위법한 영업행위로 인한 재산상 손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
- 2. 금융상품을 선택하고 소비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지식 및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
- 3. 금융상품의 소비로 인하여 입은 피해에 대하여 신속·공정한 절차에 따라 적절한 보상을 받을 권리
- 4. 기타 금융소비자보호법령에 따라 보장되는 금융소비자의 권리

제5조(금융소비자의 권리 보호를 위한 회사의 책무)

회사는 금융소비자의 기본적 권리가 실현되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책무를 진다.

- 1. 국가의 금융소비자 권익증진 시책에 적극 협력할 책무
- 2. 금융상품을 제공하는 경우에 금융소비자의 공정한 금융소비생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할 책무
- 3. 금융상품으로 인하여 금융소비자에게 재산에 대한 위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책무
- 4. 금융상품을 제공하는 경우에 금융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이나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거래조건이나 거래방법을 사용하지 아니할 책무
- 5. 금융소비자에게 금융상품에 대한 정보를 성실하고 정확하게 제공할 책무
- 6. 금융소비자의 개인정보가 분실·도난·누출·위조·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개인정보를 성실 하게 취급할 책무

제6조(금융소비자 권리 안내)

- ① 회사는 금융상품을 판매하는 경우 금융상품과 관련한 금융소비자보호법령이나 계약상 금융소비자의 권리 등을 금융소비자의 관점에서 고려하여 금융소비자의 권리를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적극 설명하고 안내하여야 한다.
- ② 제 1 항에 따른 안내는 적정성, 시의성 및 충실성이 확보되는 방법으로 안내하여야 한다.
- ③ 금융소비자 총괄책임자는 제 1 항에 따른 안내와 관련하여 세부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.

제 3 장 금융소비자보호기준의 운영을 위한 조직 및 인력

제7조(금융소비자보호 총괄기관)

① 이 기준의 운영은 내부통제기준 제 10 조에 정한 금융소비자보호 총괄기관(이하 "총괄기관"이

라 한다)이 담당한다.

- ② 총괄기관은 금융상품의 개발, 판매 및 사후관리 과정에서 판매되는 금융상품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사항을 점검하여야 하고, 점검과정에서 금융소비자의 피해 발생이 우려되거나 피해가 발생한 경우 등 중대한 사안이 발생하는 경우 대표이사에게 보고하고,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.
- ③ 총괄기관은 발생 민원에 대해 즉각적으로 금융소비자의 불만내용을 파악하고 대응하여야 하며, 접수된 민원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처리방법·과정관리 등을 포함한 업무처리절차를 수립·시행할 수 있다.
- ④ 총괄기관은 민원평가를 실시하여 민원발생에 책임이 있는 부서, 업무처리과정 및 담당자 등을 규명하고, 그 내용을 관련부서에 통보하여 개선방안을 강구하도록 한다.
- ⑤ 총괄기관은 금융소비자보호와 관련하여 임직원에게 자료제출, 소명 등의 요구를 할 수 있고, 해당 임직원은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. 다만, 임직원은 총괄기관의 요구 등에 신속한 보고가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총괄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.

제8조(금융소비자보호 총괄책임자)

- ① 금융소비자보호 총괄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
- 1. 금융소비자보호 총괄기관의 업무 통할
- 2. 금융소비자보호 관련 제도 기획 및 개선, 기타 필요한 절차 및 기준의 수립
- 3. 금융상품 각 단계(개발, 판매, 사후관리)별 금융소비자보호 체계에 관한 관리·감독 및 검토 업무
- 4. 민원접수 및 처리에 관한 관리·감독 업무
- 5. 금융소비자보호 관련 부서 간 업무협조 및 업무조정 등 업무 총괄
- 6. 대내외 금융소비자보호 관련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업무 총괄
- 7. 민원발생과 연계한 관련 부서·직원 평가기준의 수립 및 평가 총괄
- 8. 이 기준의 준수여부에 대한 점검·조치·평가 업무 총괄
- 9. 대표이사의 업무 중 위임받은 다음 각 목의 업무
- 가. 내부통제기준 및 이 기준의 위반 방지를 위한 예방대책의 마련 및 시행
- 나. 내부통제기준 및 이 기준의 준수 여부에 대한 주기적, 상시적 점검 계획의 수립 및 시행
- 다. 내부통제기준 및 이 기준의 위반내용에 상응하는 조치 방안·기준의 마련 및 시행
- 10. 금융소비자보호와 관련하여 이사회, 대표이사, 내부통제위원회로부터 이행을 지시·요청받은 업무
- 11. 기타 금융소비자의 권익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업무
- ② 금융소비자보호 총괄책임자는 금융소비자의 권익이 침해되거나 혹은 침해될 현저한 우려가 발생한 경우 지체없이 대표이사에게 보고하여야 하며, 대표이사는 보고받은 사항을 확인하여 신속히 금융소비자 권익침해 위험이 해소되는데 필요한 제반사항을 수행·지원하여야 한다.
- ③ 금융소비자보호 총괄책임자는 소비자 보호와 이해상충 우려가 있는 업무를 수행하여서는 아니된다.

제9조(금융소비자보호 업무담당자)

회사는 회사의 특성을 고려하여 민원 예방 및 처리, 제도 개선, 민원 평가, 전산시스템 운영, 금융소비자보호 교육, 홍보, 민원 감사업무 등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내부통제기준 제14조에서 정

한 금융소비자보호 업무담당자를 지정하고 운영할 수 있다.

제10조(금융소비자보호 총괄책임자 및 금융소비자보호 업무담당자의 독립성 보장)

- ① 회사는 금융소비자보호 총괄책임자 및 금융소비자보호 업무담당자에 대하여 회사의 재무적 경영성과에 연동하지 아니하는 별도의 공정한 업무평가기준 및 급여지급기준을 마련·운영하여야 하고, 근무평가시 징계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타 업무담당자 등 타 직군 등에 비해 직군 차별, 승진 누락 등 인사평가의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.
- ② 회사는 민원 발생건수 및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 결과 등을 금융소비자보호 총괄책임자 및 금융소비자보호 업무담당자의 급여 등 보상에 연계하지 아니하여야 하고, 민원 발생 및 민원 처리과정의 부적정 등의 원인을 직접 제공한 부서 및 담당자의 급여 등 보상에 반영하여야 한다.
- ③ 회사는 금융소비자보호 총괄책임자 및 금융소비자보호 업무담당자의 업무평가기준 및 독립성보장에 관한 세부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.

제 4 장 금융소비자보호기준의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·조치 및 평가

제11조(금융소비자보호기준의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 및 평가)

- ① 총괄기관은 임직원등의 금융상품 판매 관련 업무가 이 기준 및 금융소비자보호법령을 충실히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를 업무의 중요도 및 위험도 등을 감안하여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.
- ② 총괄기관은 각 조직단위의 장으로 하여금 총괄기관이 정한 방법에 따라 담당조직 및 담당업무에 대하여 이 기준 및 금융소비자보호법령 위반여부를 점검하게 할 수 있고, 이 경우 각 조직단위의 장은 점검결과를 금융소비자보호 총괄책임자(이하 "총괄책임자"라 한다)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- ③ 총괄기관은 이 기준 및 금융소비자보호법령의 준수 여부를 점검하는 과정에서 위법·위규행위를 발견하였거나 중대한 금융소비자의 피해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임직원 등 및 관련 부서장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, 임직원에 대한 출석요청, 현장조사(필요시 준법감시·감사부서 등에 의뢰 가능)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, 조치를 받은 자 또는 해당 부서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.
- ④ 총괄기관은 제 1 항 내지 제 2 항에 따른 점검의 방법, 제 3 항의 위법·위규행위의 사실 확인 시조치사항 등이 포함된 세부절차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.
- ⑤ 총괄책임자는 점검결과에 따른 업무 및 제도 개선을 관련부서에 요구할 수 있다. 이 경우 개선 요구를 받은 부서장은 지체없이 조치를 취한 후, 그 결과를 총괄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 다만, 조치에 시일이 소요되는 등 일정기간 내 조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총괄책임자에게 보고하고, 부득이한 사유로 개선업무의 수행이 불가능할 경우 총괄책임자에게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.
- ⑥ 총괄책임자는 이 조에 따른 점검사항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대표이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제12조(임직원 등의 법령, 규정 위반에 대한 조치)

① 총괄기관은 금융소비자보호 업무와 관련하여 해당 임직원 등이 이 기준 및 금융소비자보호법 령을 위반하였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위반행위의 정도, 위반횟수,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

- 을 감안하여 관련부서(준법감시·감사부서 등)에 해당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, 이를 통보받은 부서의 장은 조사 등을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그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.
- ② 총괄기관은 금융소비자보호와 관련된 위법·위규행위를 발견한 경우에는 이를 대표이사에 보고 하여야 하며, 대표이사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.
- ③ 총괄기관은 제 2 항의 위법·위규행위가 중대하다고 판단될 경우에 이를 감사위원회(감사위원회가 없는 경우 감사)에 보고할 수 있다.

제 5 장 민원·분쟁 발생시 업무처리 절차

제13조(민원업무의 처리)

- ① 회사는 민원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민원업무지침을 마련·운영할 수 있다.
- ② 민원 업무의 처리는 총괄기관에서 담당하고, 총괄책임자가 민원업무를 총괄한다.
- ③ 총괄기관은 민원의 내용을 고려하여 해당업무 담당부서에 이송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. 이때 담당부서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총괄기관이 그 내용을 검토하여 1개의 담당부서를 지정하여 이송할 수 있고, 지정된 담당부서는 관련부서의 의견을 종합하여 그 조사결과를 총괄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.
- ④ 민원신청이 익명이나 가명으로 이루어진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이를 조사·처리하지 아니할 수 있다.
- ⑤ 총괄부서는 민원의 처리에 있어 그 접수, 협의 및 처리의 과정과 이행여부를 확인하는 업무일체 및 처리결과에 대한 기록을 유지, 관리하여야 하고 관련 법령이 정하는 기간 동안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.

제14조(민원의 접수 및 처리)

- ① 민원의 접수는 문서, FAX, 인터넷 또는 녹취전화 등 입증이 가능한 방법으로 한다. 다만, 민원인의 의사표시를 문서로 증명할 필요가 없는 민원의 경우에는 직접 구술 또는 전화로 접수할 수있다.
- ② 임직원은 회사와 관련된 민원을 접수한 즉시 총괄기관에 보고하여야 하며, 총괄기관은 민원접수대장에 해당 민원의 요지 등을 기재하고, 총괄책임자는 그 내용을 대표이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- ③ 민원이 접수된 경우 총괄책임자는 지체없이 민원의 발생경위를 해당 부서에 요구하여야 하고, 관련 임직원은 민원의 발생경위를 소속 부서장의 확인을 받아 문서로 총괄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- ④ 총괄기관은 민원내용에 중대한 흠결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민원인에게 7 영업일 이내에 제 1 항 본문의 방법으로 보완 또는 보정을 요구하여야 한다. 다만, 민원인이 그 기간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고려하여 그 기간을 정할 수 있다.
- ⑤ 총괄기관은 민원인이 제 4 항에 따른 기간 내에 민원내용을 보완 또는 보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 회에 한하여 보완 또는 보정을 다시 요구할 수 있다. 이 때 민원인이 보완 또는 보정 요구

- 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취하한 것으로 본다.
- ⑥ 민원인은 해당 민원의 처리가 종결되기 전에 그 민원내용을 변경할 수 있고, 민원 신청을 철회 또는 취하할 수 있다. 이 때 민원내용의 변경, 민원의 철회·취하는 제 1 항 본문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.
- ⑦ 총괄기관은 민원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임직원 및 부서장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요구할 수 있고, 그 요구 또는 의뢰를 받은 해당 임직원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. 또한 총괄기관은 사실 확인을 위하여 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민원과 관련하여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.
- 1. 민원 관련 자료의 제출
- 2. 해당 임직원에 대한 조사
- ⑧ 민원 발생에 관련된 부서장은 총괄기관과 협의하여 민원에 따른 사후 대책을 수립하여 그 이행여부를 서면으로 총괄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하고, 총괄책임자는 그 이행여부를 점검하여야 한다.

제15조(민원의 처리기간)

- ① 민원은 접수일로부터 14영업일 이내에 처리한다. 다만, 금융감독원, 한국소비자보호원, 또는 감사원 등 국가기관을 통한 민원은 그 요청기간 이내에 처리할 수 있다.
- ② 제 1 항의 처리기간의 계산은 민원서류가 회사에 최초로 접수된 날부터 민원인에게 최종 회신을 발송한 날까지로 하되 최초 접수일과 최종 회신일은 각각 1 일로 본다.
- ③ 제 1 항의 처리기간에 다음 각 호의 기간은 이를 계산하지 아니한다.
- 1. 민원인의 귀책사유로 민원처리가 지연되는 기간
- 2. 민원 서류의 보완·보정에 소요되는 기간
- 3. 검사, 조사 또는 외부기관에 대한 질의 등에 소요되는 기간
- 4.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대표이사가 특별히 인정하는 기간
- ④ 총괄기관은 제 1 항에서 정한 처리기간 이내에 해당 민원을 처리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연장기간을 민원인에게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.

제16조(민원 처리결과의 통지)

- ① 회사는 민원처리를 종결한 경우 그 결과를 지체없이 민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하고, 그 통지사항에는 민원의 처리결과, 처리근거, 이의신청 안내 등을 포함한다.
- ② 민원인이 제 14 조제 4 항의 기간 이내에 민원서류 등의 보완·보정을 하지 아니하거나 민원인의 소재지나 연락처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보완·보정의 요구가 2 회에 걸쳐 반송된 때에는 민원을 철회한 것으로 보아 이를 내부적으로 종결 처리할 수 있다.
- ③ 회사는 민원인의 요구에 대하여 이를 거부하거나 민원사항의 해결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통지하여야 한다.
- ④ 민원 처리결과의 통지는 다른 법령 등에서 특별히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서 등의 방법으로 통지한다.

제17조(개인정보 보호)

- ① 회사는 민원업무 처리과정에서 지득한 개인정보 등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보관하여야 한다.
- 1. 개인정보 등이 서류에 의하여 보관된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시건장치가 되어있는 장소에 보관
- 2. 개인정보 등이 전산시스템 및 개인용 컴퓨터 등에 파일 형태로 보관된 경우에는 비밀번호의 입력을 통하여 개인정보에 접근
- ② 회사의 민원업무 처리 담당 임직원 및 임직원이었던 자는 민원업무 처리과정에서 알게 된 제 1 항의 개인정보를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민원처리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.

제 6 장 민원·분쟁 대응 관련 교육 및 훈련

제18조(임직원 교육 및 훈련)

- ① 총괄기관은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이 기준 및 금융소비자보호법령의 위반과 민원·분쟁을 예방하기 위하여 민원사례, 민원응대요령, 금융소비자보호제도 및 민원예방 등에 대한 교육을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을 통하여 연 1 회 이상 실시하며, 주요 법령 및 제도 변경이나 불완전판매 빈발사례 등에 대한 교육을 필요시 실시할 수 있다.
- ② 총괄기관은 과거 민원이력, 금융감독원 검사 및 현장점검 사례 등을 감안하여 임직원 중에서 불완전판매 및 위법부당행위 유발 임직원을 지정·관리할 수 있으며, 동 임직원에 대해서는 불완전판매 및 위법부당행위 예방교육을 별도로 직접 실시하거나 관련부서에 실시를 요청할 수 있고, 요청을 받은 관련부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.
- ③ 회사는 금융감독원 등 외부기관으로부터 민원예방과 관련된 정책의 시행이나 임직원 교육실시 등의 요청이 있는 경우 이에 적극 협조한다.

제19조(임직원의 역량개발제도)

- ① 총괄기관의 임직원은 금융소비자보호 전문역량을 개발하기 위한 자격증 취득, 교육 참여를 위한 특별 휴가 및 비용 지원을 총괄책임자를 통하여 회사에 요청할 수 있다.
- ② 회사는 제 1 항의 요청에 대하여 회사의 조직과 인력, 재정 등을 감안하여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를 승인하여야 한다.
- ③ 회사는 총괄책임자가 추천한 금융소비자보호 우수 직원 또는 우수부서의 내용을 심의하여 해당 직원 또는 부서에 표창 및 포상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.

제 7 장 민원·분쟁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전산처리시스템

제20조(민원관리시스템의 구축)

- ① 회사는 독립적이고 공정한 민원처리와 구제절차를 마련·운영하여야 하며, 금융소비자가 시의적절하고 효율적이며 저렴한 비용으로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.
- ② 회사는 금융소비자가 다양한 민원접수 채널(방문, 전화, 서신, 팩스, 전자우편, 인터넷 등)을 통하여 언제 어디서나 민원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, 회사는 민원·분쟁을 효율적·체계적으로 관리

하기 위하여 민원관리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다.

- ③ 제 2 항에 따른 민원관리시스템은 진행 단계별로 구분되어야 하고, 각 단계별 소요기간, 업무담당자를 명시하여야 하며, 민원·분쟁 진행상황 및 처리결과의 주요 내용을 금융소비자가 요청하는 방법으로 안내·통지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하여야 한다.
- ④ 회사는 제 2 항의 민원관리시스템을 통하여 민원처리시 접수사실 및 사실관계 조사현황 등을 금융소비자에게 통지하고, 민원인의 의견을 회사 경영에 반영하여 민원예방에 노력한다.
- ⑤ 회사는 민원 처리결과를 금융소비자가 수긍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, 사실관계 조사결과 등의 명시적인 근거를 제시하고 금융소비자가 이해하기 쉬운 용어를 사용하여 가능한 자세히 기재하며, 민원처리 후에는 처리결과를 문서, 팩스, 전자우편, 문자메시지, 전화 등의 방법으로 금융소비자에게 통지한다.

제 8 장 금융소비자보호기준의 제정 및 변경 절차

제21조(금융소비자보호기준의 제정 및 변경)

- ① 회사는 관련 법령의 제·개정, 감독당국의 유권해석, 총괄기관 등의 개선 요구, 대규모 소비자 피해발생 등이 있는 경우, 이를 반영하기 위하여 이 기준의 내용을 신설·변경할 수 있다.
- ② 회사는 이 기준의 내용을 신설·변경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 다만, 관련 법령 또는 규정의 제·개정에 연동되어 변경해야 하는 사항, 이사회가 의결한 사항에 대한 후속조치,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대표이사의 승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.
- ③ 총괄기관은 이 기준을 제·개정하는 경우 제·개정의 필요성을 소비자보호 측면에서 검토하고 대표이사에게 검토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.
- ④ 회사는 이 기준을 신설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·개정 사실 및 그 이유,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, 적용시점, 적용대상 등의 주요사항을 구분하여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.
- ⑤ 회사는 이 기준의 제·개정 사실을 임직원등이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안내하고, 필요시 교육을 실시한다.
- ⑥ 이 기준의 시행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별도의 내부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.

제 9 장 금융소비자의 권리행사에 대한 대응

제22조(담당부서)

- ① 금융소비자의 권리행사에 대한 대응은 총괄기관이 담당한다.
- ② 총괄기관은 금융소비자의 권리행사에 대응하기 위하여 관련부서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고, 해당 부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.

제23조(자료열람 요구에 대한 대응)

① 금융소비자는 분쟁조정, 소송의 수행 등 권리구제 및 그 준비를 목적으로 회사가 기록 및 유

지.관리하는 자료의 열람.청취(사본의 제공을 포함한다)를 요구할 수 있다.

- ② 총괄기관은 제 1 항의 요구를 받는 경우, 금융소비자가 자료 열람·청취 요구의 목적 및 열람·청취를 요구하는 자료의 범위를 특정하여 그 요구를 한 날로부터 7 영업일 이내에 해당 자료를 열람·청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. 다만, 동 기간 내에 해당 자료를 열람·청취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금융소비자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고, 그 사유가 소멸하면 지체없이 열람·청취하게 하여야 한다.
- ③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융소비자에게 그 사유를 알리고 열람· 청취를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다.
- 1. 법령에 따라 열람·청취가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
- 2. 다른 사람의 생명·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
- 3. 열람·청취로 인하여 회사의 영업비밀이 현저히 침해되는 등 열람·청취가 부적절한 경우
- 4. 관련 법령 등에서 정한 보관기간 만료로 인하여 회사가 자료를 삭제한 경우
- 5. 그 밖에 금융소비자의 권리구제와 관련이 없는 내용으로서 회사가 사전에 구체적으로 정한 경 우

제24조(일반금융소비자의 청약 철회에 대한 대응)

- ① 일반금융소비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로부터 7 일(회사와 일반금융소비자 사이에 동 기간보다 긴 기간으로 약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) 내에 서면등(서면, 전자우편, 휴대전화문자메시지 또는 이에 준하는 전자적 방법을 말한다)의 방법으로 청약의 철회 의사를 표시하는 경우, 회사는 제 3 항에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이를 수락하여야 한다.
- 1. 계약서류를 제공한 날
- 2. 계약체결일(법 제 23 조 제 1 항 단서에 따라 계약서류를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)
- ② 제 1 항의 청약의 철회는 일반금융소비자가 서면 등을 발송한 때에 그 효력이 발생하고, 일반 금융소비자가 청약의 철회 의사를 표시하기 위하여 서면 등을 발송한 경우에는 회사에 지체없이 그 발송 사실을 알려야 한다.
- ③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약의 철회를 거절할 수 있다.
- 1. 일반금융소비자가 제 1 항의 행사 기간을 경과하여 의사표시를 한 경우
- 2. 금융상품이 법, 시행령, 감독규정 등에 따라 청약의 철회가 가능한 금융상품이 아닌 경우
- 3. 일반금융소비자가 예탁한 금전 등을 지체없이 운용하는데 동의한 경우(회사가 해당 일반금융소비자에게 제 1 항에서 정한 청약 철회의 기간 이내에 예탁한 금전 등을 운용하는데 동의하는 경우에는 그 청약의 철회를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설명하고, 일반금융소비자로부터 직접 서명, 기명날인, 녹취 등의 방법으로 확인을 받은 경우에 한한다)
- ④ 회사는 제 3 항의 사유가 없는 한, 청약의 철회를 접수한 날로부터 3 영업일 이내에 이미 받은 금전 등을 반환하고, 금전 등의 반환이 늦어진 기간에 대해서는 해당 금융상품의 계약에서 정해진 연체이자율을 금전 등의 대금에 곱한 금액을 일 단위로 계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.
- ⑤ 제 1 항에 따라 청약이 철회된 경우 회사는 일반금융소비자에 대하여 청약의 철회에 따른 손해 배상 또는 위약금 등 금전의 지급을 청구할 수 없으며, 제 1 항 및 제 4 항에 반하는 청약의 철회에 대한 특약으로서 일반금융소비자에게 불리한 것은 무효로 한다.

- ⑥ 회사는 제 4 항에 따라 일반금융소비자에게 금전(이자 및 수수료를 포함한다)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해당 일반금융소비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입금하여야 한다.
- ⑦ 총괄기관은 이 조에 따른 청약 철회의 행사 및 거절과 관련하여 사유의 적정성 여부를 확인한 후에 그 업무를 처리하여야 하며, 이를 위하여 관련부서에 사실확인 또는 자료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.

제25조(계약 해지 요구에 대한 대응)

- ① 금융소비자가 법에서 정하는 적합성 원칙, 적정성 원칙, 설명의무, 불공정영업행위 금지 또는 부당권유행위 금지를 위반하여 체결한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계약의 해지를 서면 등으로 요구하는 경우, 회사는 제2항에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이를 수락하여야 한다.
- 1. 금융소비자와 회사 간에 계속적 거래가 이루어질 것
- 2. 금융소비자가 계약기간 종료 전에 계약을 해지할 경우 그 계약에 따라 금융소비자의 재산에 불이익이 발생할 것
- 3. 금융소비자가 위법한 계약을 체결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(해당 기간은 계약체결일로 부터 5년 이내의 범위에 있어야 한다)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것
- 4. 금융소비자가 금융상품의 명칭, 법 위반사실이 기재된 계약해지요구서에 위반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할 것
- ② 회사는 다음 각 호와 같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금융소비자의 계약 해지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.
- 1. 금융소비자가 위반사실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시한 경우
- 2. 계약체결 당시에는 위반사항이 없었으나 금융소비자가 계약체결 이후의 사정변경에 따라 위반사항을 주장하는 경우
- 3. 회사가 금융소비자의 동의를 받아 위반사항을 시정한 경우
- 4. 회사가 계약의 해지를 요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법 위반사실이 없음을 확인하는데 필요한 객관적·합리적인 근거자료를 금융소비자에게 제시한 경우. 다만, 10일 이내에 금융소비자에게 제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다.
- 가. 계약의 해지를 요구한 금융소비자의 연락처나 소재지를 확인할 수 없거나 이와 유사한 사유로 통지기간 내에 연락이 곤란한 경우: 해당 사유가 해소된 후 지체 없이 알릴 것
- 나. 법 위반사실 관련 자료 확인을 이유로 금융소비자의 동의를 받아 통지기한을 연장한 경우: 연장된 기한까지 알릴 것
- 5. 금융소비자가 회사의 행위에 법 위반사실이 있다는 사실을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이미 알고 있었다고 볼 수 있는 명백한 사유가 경우
- ③ 회사는 금융소비자의 계약 해지 요구를 받은 날부터 10 일 이내에 금융소비자에게 수락여부를 통지하여야 하며, 그 요구를 거절할 때에는 거절사유를 함께 통지하여야 한다.
- ④ 회사가 제 2 항에서 정하는 계약 해지의 거절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계약해지를 수락하지 아니하는 경우, 금융소비자는 해당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.
- ⑤ 제 1 항 및 제 4 항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, 해당 계약은 해지시점을 기준으로 장래를 향하여 효력을 상실하고, 회사는 수수료, 위약금 등 계약의 해지와 관련된 비용을 요구할 수 없다.

⑥ 총괄기관은 이 조에 따른 위법계약해지권의 행사 및 거절과 관련하여 사유의 적정성 여부를 확인한 후에 그 업무를 처리하며, 이를 위하여 관련부서에 사실확인 또는 자료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.

제 10 장 계약 체결 후 금융소비자보호 점검 및 제도 개선

제26조(계약 체결 후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한 필요사항 점검)

- ① 회사는 금융상품과 관련한 민원·분쟁이 빈발하는 경우 주요 원인을 파악하고, 개선사항을 도출하여 관련 부서장에게 제도 개선방안을 요구하고, 그 개선 여부를 관리하여야 한다.
- ② 제도개선을 요구받은 관련부서는 신속하게 개선계획 및 그 결과를 총괄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하고, 총괄책임자는 개선계획의 진행상황 및 그 결과를 대표이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- ③ 회사는 금융소비자와 계약 체결 후 금융소비자가 자료열람 요구, 청약철회 또는 위법계약해지 권의 행사, 기타 금융소비자보호법규상 권리를 행사하는 경우 이 기준, 내부통제기준 및 금융소비 자보호법령에 따라 적절하게 처리하고 있는지 여부를 점검하여야 한다.
- ④ 회사는 금융소비자보호와 관련한 제도 개선사항의 발굴을 위한 다양한 접수채널을 개발하고, 이를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를 구축·운영한다.

제27조(금융소비자보호 평가도구 마련)

총괄기관은 민원의 처리 및 예방을 포함하여 각 부서 및 임직원이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금융소비자보호에 충실하였는지를 조직 및 개인의 성과평가에 반영하는 평가도구를 마련하고, 총괄책임자는 평가도구에 기반한 모니터링 및 실제 평가를 총괄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기준은 금융위원회의 일반 사모집합투자업 등록일부터 시행한다. 다만, 금융상품의 판매와 관련된 조항은 회사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직접 판매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때부터 적용한다.